

산학협력 우수교원 포상에 관한 지침

제정 2018. 08. 28. 산학협력단 규칙 제2018-1호

개정 2026. 08. 07. 산학협력단 규칙 제2026-2호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 연구과제 수탁 실적이 우수한 교원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산학협력 연구 성과 창출을 장려하고, 연구에 진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우수교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대상) 산학협력 우수교원 선정 및 포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(이하 '본교'라고 한다.) 전임교원 중 총괄 과제책임자 1인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타 기관과 공동연구에 따른 세부 과제책임자는 수탁 연구비가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되는 경우에만 포상 대상자로 한다.

제3조(인정범위) 수탁 연구 과제 중에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되어 간접비가 징수된 외부 과제에 한하여 인정한다.
<개정 2026. 08. 07.>

제4조(실적평가) ① 실적평가는 산학협력단 회계연도 간접비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
②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, 제1항에 따른 간접비 징수금액의 1.5배로 한다.
<신설 2026. 08. 07.>

제5조(포상인원) ① 포상인원은 제2조의 대상자에 한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간접비 징수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상위 6명으로 하되, 다음과 같이 한다.<개정 2026. 08. 07.>

1. 최우수상 1명
2. 우수상 2명
3. 장려상 3명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인원 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처리 방안을 심의·의결한다.<개정 2026. 08. 07.>

제6조(포상금액) 선정된 대상자의 포상금액은 회계연도 간접비 전체 징수금액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포상대상자 확정) 포상 대상자 확정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한다.<개정 2026. 08. 07.>

제8조(지급방법) 포상금은 산학협력단 회계예산에서 지급하며 관련 업무절차 등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한다.

제9조(시행세칙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8. 8. 28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6. 08. 07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4조제2항에 대하여는 2027회계연도 실적 포상 시부터 시행한다.